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471
----------	-----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8일

발의자 이창열 의원

찬성자 남진삼, 박춘희, 김성기 의원

1. 제안이유

기존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내용에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수립·시행(안 제3조)
- 나. 편의시설의 설치 관련(안 제4조 ~ 제5조)
- 다.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안 제6조)
- 라. 군수의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안 제7조)
- 마. 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안 제8조)
- 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지원(안 제9조)
- 사.民間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 권고(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8. 22. ~ 8. 29.(의회사무과-13865), 아래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복지정책과)	검토
<p>제3조(중기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 시행 할 수 있다.</p> <p>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_____</p> <p>2. _____</p> <p>3. _____</p> <p>4. _____</p> <p>5. _____</p> <p>6. _____</p>	<p><u>제3조 삭제</u></p> <p>제3조 대한 삭제 사유 한국수화언어 발전기본계획은 한국수화언어법의 관할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에서 5년마다 수립 · 시행을 함에 따라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중복되고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p>	<p>(불수용)</p> <p>「한국수화언어법」상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은 그 목적을 <u>한국수어 자체의 발전 · 보전으로</u> 그 범위는 한국수어 체계정비, 농문화 보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 등임</p> <p>반면,</p> <p>조례안 제3조 “중기계획”의 목적은 <u>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u>로서 그 범위를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수어 통역사 지원 등으로 하고 있음</p> <p><u>⇒ 계획의 대상과 실현 수단이 다르므로 내용상 충돌 · 중복이 아님</u></p> <p>(계획 내용 자체가 다름)</p> <p>또한,</p> <p>안 제3조 중기계획의 필요성은 단발적 사업이 아닌 체계적 지속가능한 청각장애인 지원정책을 안정적 추진하기 위함</p>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자막 시스템, 수어통역 전용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평창군 및 평창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자막 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돋기 위하여 국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국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중기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5.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의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평창군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군수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양성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한국수화언어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

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4. 청각장애인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벨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연락처	(033) 330 -2504